

# NEWSLETTER 612

Jan 12, 2022

## 「관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1월 1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 I. 주요 개정 사항

#### 1.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 종전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등에 대하여만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운임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b>제20조 (운임 등의 결정)</b> ①~④ (생략) ⑤ 법 제 30조 제1항 제 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 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u>수입자가 부담하는</u> 비용을 말한다. ⑥ (생략)	<b>제20조 (운임 등의 결정)</b>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b>따른</b> ----- ----- <b>발생하는</b> ----- ⑥ (현행과 같음)

#### 2.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현 행	개 정 안
<b>제39조(가산세)</b> ① 법 제 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 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u>25</u> 의 율을 말한다.	<b>제39조(가산세)</b> ① ----- ----- ----- <b>22</b> -----



## 5.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 환급 증명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현 행	개 정 안
<p>제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p> <p>① (생략)</p> <p>② 법 제 106조의 2 제 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li> <li>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li> </ol> <p>③ 법 제 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li> <li>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li> </ol>	<p>제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0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u></li> <li><u>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u></li> <li><u>법 제 10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u></li> <li><u>법 제106조의 2 제2항의 경우 :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u></li> </ol> </li> </ol> <p>③ <u>법 제 10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물품을 전부 수출 또는 환불된</u>----- -----</li> <li><u>-----일부가 수출 또는 환불된</u>----- -----</li> </ol>

## II.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hmiy@korea.kr](mailto: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mailto:ohmiy@korea.kr)
- 팩스 : 044-215-8075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안(제2022-18호)

[붙임2]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 Contact



김승욱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mailto:sokim@esein.co.kr)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mailto:hjhwang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